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 추가〉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43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2.
3. 회부연월일 : 2024. 1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재난의 대응,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만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체제는 재난의 사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재난의 상시 대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u>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u>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 ⑦ (생략)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 ----- ----- <u>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u> 및 예방·대비-----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¹⁾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복구 등 수습을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조치, 자원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임시기구임.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현행법은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의 발생 시에 운영되는 임시기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 사후적 대책에 관한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형을 불문하고 다양한 대규모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난에 대한 상시 대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총괄·조정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사전적 대비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성격 및 해외재난의 특성에 관한 정부의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난의 예방과 대비에 관한 사항은 각 재난의 유형별로 개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책임하에 상시적으로 추진²⁾되고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가동되는 임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는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개정안과 같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예방과 대비 업무를 부여할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평상시 수행하는 재난 예방, 대비업무와 중복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임시기구가 아닌 상시 조직으로 재편하는 결과가 되어 그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외교부는 해외재난³⁾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외교부 업무 및 해외재난의 특성상 전 세계 재난상황을 사전에 예방·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